

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

2023. 3. 14.

복지건설위원회

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025
----------	------

2023. 3. 14.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3. 2. 27.

나. 회부일자 : 2023. 3. 8.

다. 상정일자 : 2023. 3. 13.

2. 안건설명

가. 제안설명자 : 이용환 복지국장

나. 개정이유

2022년 하반기 광진구 장학위원회 정기회의 심의 결과, 장학생 선발의
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학생 추천 주체를 소속 학교장 및 대학총장,
주소지 동장으로 일원화 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가. 장학생 추천 주체 변경(안 제13조)

라. 참고사항

가. 상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(23. 1. 16 ~ 23. 2. 6.) : 별도 의견 없음

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(3) 비용추계서 : 미첨부 사유서 붙임

(4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사항 없음

(6)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윤선영)

□ 의안번호 제2025호 「서울특별시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2023년 2월 27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3월 13일 복지건설
위원회에 심사·회부된 안건임

□ 본 안건은 2022년 하반기 광진구 장학위원회 정기회의 심의 결과에
따라 장학생 추천 주체를 학교장 및 대학총장, 주소지 동장으로
일원화 하고자 제출된 것임

□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3조(추천)에서 장학생 추천 주체를 소속 학교장(대학총장),
동장, 특기장학생 추천은 광진구 체육회장 및 광진예술문화단체

총연합회에서 체육회장 및 광진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를 제외
 하였음

현행	개정안
추천인 : 학교장(대학총장), 동장, 광진구 체육회장, 광진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	추천인 : 학교장(대학총장), 동장

☐ 광진구 장학사업 운영에 따른 최근 3년간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

구분	금액(천원)	대상자(명)		비고
		고등학생	대학생	
2022년	87,750	24	26	
2021년	86,500	29	24	
2020년	84,000	34	20	

☐ 2022년 장학생 선발 계획은 다음과 같음(2023년 선발계획은 7월 중 확정)

- 추진 근거 :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조례 제14조
- 선발 대상 : 관내,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고등학생, 대학생
- 선발 인원 : 52명 내외(고등학생 29, 대학생 26)
- 지원 금액 : 총 86,500천원 내외

- 1인당 지원액: 고교생 1,000천원, 대학생 2,500천원

○ 선발 분야 및 인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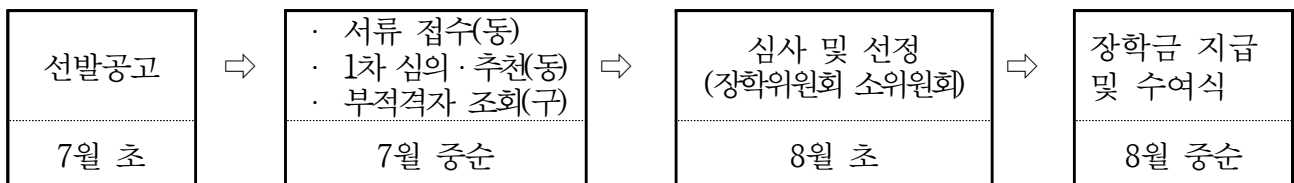
(단위 : 명)

선발 분야	선발인원 (추천권자)			비 고
	계	고등학생	대학생	
계	52	29	23	
· 일반 장학생	30	15 (동장)	15 (동장)	배점표 적용하여 각 동별 평가 후 추천
· 성적우수 장학생	15	7 (학교장)	8 (동장)	* 대학생은 배점표 적용하여 각 동별 평가 후 추천
· 특기 장학생	7	7 (체육회장, 예총회장)	-	

※ 장학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최종 선발인원 및 지원금액은 변동 될 수 있음

○ 선발 방법 : 동장 추천(배점표 적용 심사 후) 및 학교장 추천 학생에
대해 장학위원회에서 최종심사 선발

○ 추진 일정



<장학생 자격요건>

구분	자격요건(동 조례 제12조)
공통자격	· 추천일 현재 광진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 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

일반장학생	· 생활이 곤란한 학생으로 - 직전학기 성적이 상위6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고등학생 -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2.5이상인 대학생
성적우수 장학생	· 직전학기 성적이 상위2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고등학생 ·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4.0이상인 대학생
특기 장학생	· 예체능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각종 대회 수상경력이 있는 학생
제외자	· 다른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로부터 수업료 지원 등 장학금을 받는 학생

□ 종합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2022년 하반기 광진구 장학위원회 정기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장학생 추천자를 학교장(대학총장) 및 동장으로 바꾸고자 제출되었음
- 일부 단체만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는 것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추천인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임
- 다만, 추천자가 한정적일 경우 대상자의 선택 범위가 좁아질 수 있으므로, 장학금 지원이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후보군에 오를 수 있는 추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
- 검토 결과, 관련 법령에 위배됨 없이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회의록 참조

5. 토론

- 회의록 참조

6. 심사결과

-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